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힘내라! 직장인 우대통장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 주요 변경내용 : 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의 변경, 가입대상 확대, 결산일,결산방식 변경, 우대금리 조항 변경, 계좌전환시 금리적용 변경, 우대서비스의 변경 등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적용범위 <u>힘내라! 직장인 우대통장(구 외환은행)</u>(이하 '이 통장'이라 함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 가입대상 이 통장은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만35세이하인 <u>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 (개인사업자 불가)</u></p> <p>제4조~ 제6조 (생략)</p> <p>제7조 금리적용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<u>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9월, 12월의 넷째주 토요일</u> 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 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<u>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</u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 1. <u>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미만</u></p>	<p>제1조 적용범위 <u>힘내라! 직장인 우대통장</u>(이하 '이 통장'이라 함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(좌동)</p> <p>제3조 가입대상 이 통장은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만35세 이하인 <u>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~ 제6조 (좌동)</p> <p>제7조 금리적용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<u>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9월, 12월의 제 3금요일</u> 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<u>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</u>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</p>	<p>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가입대상 확대</p> <p>결산일 및 결산방식 변경</p>

<p><u>2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</u></p> <p>제8조 우대금리 적용</p> <p>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우대조건 : 이 통장에 <u>매 결산일(3,6,9,12월 넷째주 토요일)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</u> 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<u>급여이체 실적이 월 50만원이상인 경우</u></p> <p><u>2. 우대금리 :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</u></p> <p>가. <u>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1백만원미만 : 연 1.5%</u></p> <p>나. <u>해당 이자계산기간의 평균잔액 1백만원이상 ~ 2백만원미만 : 연 1.0%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 전환계좌의 금리적용</p> <p>다른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또는 이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전환한 계좌인 경우 전환일이 속한 결산기에 대해서는 해당 결산기 최초 보유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</p> <p>제10조 우대서비스의 제공</p> <p>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<u>제공조건 : 이 통장의 월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 있는 고객</u></p> <p><u>(주1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</u> (생략, 변경전 약관 참조)</p> <p>2. 서비스내용</p> <p>가. 수수료면제</p>	<p><u>1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</u></p> <p><u>2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</u></p> <p>제8조 우대금리 적용</p> <p>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우대조건:이 통장에 <u>매 결산일 (3,6,9, 12월 제3금요일)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</u> 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에 2개월 이상 <u>급여이체실적이 월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</u></p> <p><u>2. 우대금리 :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</u></p> <p>가. <u>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1백만원 미만</u></p> <p>나. <u>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1백만원 이상 ~ 2백만원미만</u></p> <p>② (좌동)</p> <p>제9조 전환계좌의 금리적용</p> <p>다른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턴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</p> <p>.</p> <p>제10조 우대서비스의 제공</p> <p>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<u>제공조건 : 이 통장의 월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 있는 고객</u></p> <p><u>(주1)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</u> (생략, 변경후 약관 참조)</p> <p>2. 서비스내용</p> <p>가. 수수료면제</p>	<p>급여인정기준 명확화,</p> <p>우대금리 적용구간의 특정금리 삭제</p> <p>상품전환시 적용금리 변경</p> <p>급여인정기준 명확화</p>
---	--	-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금융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- <u>외환은행</u> CD/ATM 을 통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 - <u>외환은행</u> CD/ATM 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- <u>다른은행 CD/ATM 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</u> <p>(이하 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1조 부가혜택</p> <p>이 통장 보유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 조 ①항 2 호 가목의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제공대상 : (생략)</p> <p>2. 제공조건: 사유 발생월 전월기준으로 과거 3 개월이내 2 개월이상 <u>급여이체실적이(월 50 만 원이상)있는 경우</u></p> <p>3. 서비스기간 : (생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금융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- <u>KEB하나은행</u> CD/ATM 을 통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 - <u>KEB하나은행</u> CD/ATM 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- <u>다른은행 CD/ATM 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(월10회)</u> <p>(이하 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1조 부가혜택</p> <p>이 통장 보유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 조 ①항 2 호 가목의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</p> <p>1. 제공대상 : (생략)</p> <p>2. 제공조건: 사유 발생월 전월기준으로 과거 3 개월이내 2 개월이상 <u>급여이체실적이 (월 건당 50 만원이상)있는 경우</u></p> <p>3. 서비스기간 : (좌동)</p>	<p>행명 변경</p> <p>다른은행 CD/ATM 출금수수료 면제횟수제한</p> <p>급여인정기준 명확화</p>
---	---	---

「힘내라! 직장인 우대통장 특약」

제1조 적용범위

힘내라! 직장인 우대통장 (이하 '이 통장'이라 함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은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만 35세이하인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제한

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7조 금리적용

-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- 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 - 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- 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 - 1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
 - 2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

제8조 우대금리적용

- 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
 - 1. 우대조건 : 이 통장에 매 결산일(3,6,9,12월 제 3금요일)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이내에 2개월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 월 건당 50만원이상인 경우
 - 2. 우대금리 :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.
 - 가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미만
 - 나. 해당 이자계산기간의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이상 ~ 2백만원미만

②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제7조 ②항의 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9조 전환계좌의 금리적용

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10조 우대서비스의 제공

① 이 통장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제공조건 : 이 통장의 월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 있는 고객

(주1) 급여이체 인정기준	
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원화계정)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(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급료, 상여, 성과, 보너스, 월보수, SALARY, PAY, BONUS) - 급여일 ±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(급여일 사전 등록)
금액	● 최소 건당 50만원
제외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, 다음의 경우 제외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(단,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) -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(단, 타인에 대한 '이체'거래는 인정) ● 가맹점대금, 대출연동,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●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(예시: 예금주명 적요)

2. 서비스내용

가. 수수료 면제 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

- 전자금융^(주2)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(주2) 인터넷뱅킹,텔레뱅킹,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 등
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마감후 출금수수료 면제
- KEB하나은행 CD/ATM을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
- 다른은행 CD/ATM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(월10회)
(다만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

나. 환율우대

- 영업점 창구를 통한 외화 현찰(지폐) 환전이나 해외송금시 환율우대
(USD,JPY,EUR: 환전수수료의 60%우대, 기타통화^(주3): 환전수수료의 30%우대)

(주3) 기타통화(11개국): HKD, THB, SGD, NZD, AUD, GBP, CAD, CHF, SEK, DKK, NOK

3. 제공방법 : 전월 또는 전전월에 '제공조건' 충족시 당월에 '우대서비스'를 제공합니다.

② 우대서비스 특례 :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"우대서비스"를 제공합니다.

제 11 조 부가혜택

이 통장 보유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 10 조 ①항 2 호 가목의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제공대상 : 출산휴가/육아휴직 및 인병휴직 또는 퇴사한 경우 사유발생월 포함 6 개월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고객
(증빙서류(예시): 출산휴가/육아휴직 및 인병휴직확인서,경력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)

2. 제공조건: 사유 발생일 전월기준으로 과거 3 개월이내 2 개월이상 급여이체실적^(주1)이(월 건당 50 만원이상) 있는 경우
3. 서비스기간: 신청일로부터 6 개월이 종료되는 달까지 제공

부 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4년 1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 칙(1)

이 특약은 2015년 3월 9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

부 칙(2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